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4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박춘선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칠성, 서상열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
이영실, 이은림, 정준호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32
명)

1. 제안이유

- 수상활동의 촉진 및 다양화 등을 위하여 ‘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이 발표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기에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자의 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상위법 개정에도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근거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함(안 제4조제1항, 안 제6조제1항).
- 나.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- 다.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상레저안전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29조의2”를 “법 제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3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”를 “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4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단체”를 “법인 또는 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인 또는 단체 등”을 “단체 또는 개인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)”을 “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편의시설을 조성”을 “편의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조성 및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

다.

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운영 시 의무 등)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<u>법 제29조의2</u>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 <u>법 제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)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<u>법 제29조</u>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다.</p>	<p>제6조(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4조-----.</p>
<p>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</p>	<p>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
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
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
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
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
수 있다.

제8조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)

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
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
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
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 법인 또는 단체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단체 또는 개인 등-----

-----.

제8조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

및 운영) ① -----

--- 편의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
한다)을 조성 및 운영-----
--.

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
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
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
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
수 있다.

제9조(운영 시 의무 등) ① 제8조

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
용허가 대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
한다)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
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
여야 한다.

제9조 · 제10조 (생략)

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
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
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
다.

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
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
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
여야 한다.

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9조 및
제10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활동의 촉진 및 다양화 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‘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이 발표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기에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어,
- 상위법(수상레저안전법) 근거조항 수정,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위탁·사용허가,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